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근거 마련〉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129, 2208130, 2208132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4
II. 검토의견 :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근거 마련	6
※ 참고자료	19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6인
- 2) 제안일 : 2025. 2. 13.
- 3) 회부일 : 2025. 2.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6인
- 2) 제안일 : 2025. 2. 13.
- 3) 회부일 : 2025. 2.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는 바,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연수교육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1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6인
- 2) 제안일 : 2025. 2. 13.
- 3) 회부일 : 2025. 2.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의 사업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호국정신을 기르고 복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공단 소속 ‘보훈교육연구원’을 통해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보훈정책 개발이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 아닌 연수교육을 위탁해서 수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연구직 인력이 동종 국책 연구기관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부 직접지원 예산 규모 역시 다른 유사 연구원이나 개발원과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기관이 미래 국가보훈을 위한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삭제함으로써 사업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6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 3건의 개정안(「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①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⑤ 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미래 전망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수집, 정책 설계 및 분석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예우, 복지 등 보훈정책의 중

합적인 연구 및 개발

3.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문화
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개발,
교육 및 관련 콘텐츠 개발·보
급

4.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
력

5. 국가보훈에 관한 정책 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수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기타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
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개발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⑧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 1명을 포함한 1
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⑨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
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⑩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1.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경찰·소방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가보훈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⑪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신 설>

<신 설>

있다.

⑫ 정부는 개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⑬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⑭ 이 법에 따른 개발원이 아닌
자는 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
다.

⑮ 국가보훈부장관은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장 벌칙

제31조(과태료) ① 제15조의2제14
항을 위반하여 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
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u>공단에</u>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보훈정책개발원</u>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 -----. 1. ~ 5. (생략) 6. <u>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u> 7. ~ 11. (생략)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u><삭 제></u> 7. ~ 11. (현행과 같음)

- 3건의 개정안은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 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하에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였음.

□ 현행법 제2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¹⁾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고,²⁾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보훈정책은 실질적 보상의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독립·호국·민주의 정신 가치 계승을 통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민통합의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국가보훈이 국민의 공동체의식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국가안보, 사회통합 등 국가기반 구축에 있어 정신적 기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 보훈 및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1)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일부개정])

변화와 국민의식 성장에 수반하여 국가보훈의 상징체계를 재검토하고, 국가보훈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일이 어느 정책부분 못지않게 긴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의 정책기능 수행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³⁾

□ 국가보훈부 외에 정부조직법상 부 조직에 해당하는 18개 부(部)는 「정부출연기관법」 또는 개별법령상 근거를 통해 소관 분야 연구기관(연구원, 개발원 또는 연구소)을 두고 있고,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부처 소속으로 11개 기관이 설립되었으나, 국가보훈부는 국무총리 산하 또는 부처 직속 연구기관이 부재한 실정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사업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호국정신을 기르고 복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고,⁵⁾ 이를 근거로 의료공단 소속

3) 이해영, 2023,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4) **참고1:** 18개 부(部)의 소관 분야 연구·개발원 현황(p.13.)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외교안보연구소)에 근거를 두고 있음.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보훈교육연구원’이 존재하나, 동 연구원은 공단 내 일부 수탁과제 및 위탁 연수교육 수행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보훈 및 보훈 대상자를 위한 체계적·장기적 정책개발은 어려운 실정임.

- 보훈교육연구원은 199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 이후 소속은 공단이나, 교육·연구사업은 국가보훈부 위탁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2중적 구조로 되어 있음. 공단은 복지사업과 의료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만큼 교육·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기능적·구조적 한계가 있고, 연구원이 공단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근거가 미약하여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⁶⁾
- 보훈교육연구원의 인력을 살펴보면, 현원 기준 총 31명 중 연구직은 4명에 불과하는 등 동종 국책 연구기관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임.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복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6) 이해영, 2023, 전제서

<보훈교육연구원 조직 및 인원>



자료: 국가보훈부

- 정부 직접지원 예산 규모 역시 다른 유사 연구원이나 개발원과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보훈을 위한 정책연구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보훈교육연구원 결산 및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예산)
수입	세출예산1)	502	715	3,721	5,096	5,096
	연구용역2)	200	141	18	43	350
	기타(공무원교육 등)	375	209	661	752	444
	소계(A)	1,077	1,065	4,400	5,891	5,890
지출	인건비	2,030	1,868	2,018	2,045	2,285
	경비 등	1,317	1,536	2,966	4,260	4,111
	소계(B)	3,347	3,404	4,984	6,305	6,396
보훈공단 부담금(B-A)		2,270	2,339	584	414	506

1) '23년부터 보훈정신계승발전 위탁사업 예산 대폭 확대 반영

2) 연구용역은 대부분 보훈공단 내부적인 위탁 과제

자료: 국가보훈부

<보훈교육연구원 최근 5년간 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예산)
보훈정신계승연수	502	715	3,721	5,096	5,096
공무원 교육	55	85	238	289	130
기타 교육	11	25	254	260	14
정책연구	200	141	18	43	350
소계	768	966	4,231	5,688	5,59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의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85건의 연구과제를 54개 기관에서 수행하는 등 직속 연구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각종 보훈관련 정책연구를 수시로 외부 용역을 통해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⁷⁾
-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어렵고, 수탁기관들의 보훈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심층적인 연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수탁기관이 분산 수행하여 정책·데이터 연계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구분야 유사·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의 발생 우려가 존재함.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810	602	1,174	1,174	1,174

자료: 국가보훈부

7) 참고 2[최근 5년간 보훈부 정책연구용역 위탁 현황] 참조

-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국가보훈 관련 정책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훈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원의 수행 사업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 개정안은 예산·인력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정책 개발 등을 위해서 현 보훈교육연구원 인력 및 사무공간을 활용하되 신속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정책연구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는 독립법인 형태인 개발원을 설립하고자 함.
- 개정안은 개발원을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두되, 안 제15조의2제7항에 독립성·자율성 확보 규정을 명문화 하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에 임원 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난 제21대국회 법안 심사⁸⁾ 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329)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개발원을 정부출연기관법의 적용을 받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라고 함) 소속으로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바, 개발원의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제407회 정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121329) 심사(2023. 6. 20.)

-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형태는 보훈정책의 특성, 연구·교육 중심의 보훈정책개발원의 특성, 설립 유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할 경우 부처 요구에 대응성이 높고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정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나, 재원의 대부분을 소관 부처에 의존하므로 개발원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⁹⁾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필요함.
- 경인사 소속으로 할 경우 개발원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부처의 분파적 이익이나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국가보훈부의 정책 방향과 동떨어진 연구가 수행된다면 정부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¹⁰⁾
- 개정안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¹¹⁾

문 의 처
02)6788-5110

9) 노승용, 2023,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방안”, 한국조직학회

10) 노승용, 2023, 전개서

11)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이 개발원의 독립성·자율성 규정을 명문화하여 21대 국회에서 지적된 부처 소속으로서의 자율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의견임.

참고1

19개 부(部)의 소관분야 연구·개발원 현황

주무부처 \ 소속	국무총리 산하(23개) (정부출연기관법)	각 부처 산하(13개) (개별법 11, 소속기관 2)
기획재정부(3)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교육부(3)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중앙연구원('0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12)
외교부(1)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소속기관)
통일부(1)	통일연구원	-
법무부(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국방부(1)	-	한국국방연구원('87)
행정안전부(2)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소속기관)
국가보훈부	-	-
문화체육관광부(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16)
농림축산식품부(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2)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보건복지부(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08) 한국자활복지개발원('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05)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 한국장애인개발원('08)
환경부(1)	한국환경연구원	-
고용노동부(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여성가족부(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2)
국토교통부(3)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
해양수산부(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중소벤처기업부(1)	-	중소벤처기업연구원('21)

참고2

최근 5년간 보훈부 정책연구용역 위탁 현황

(단위: 건/백만원)

연번	연도 수행기관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85/4,187	8/421	9/731	16/862	28/1,101	24/1,072
1	가천대산학협력단	1/96				1/96	
2	갈렘에이비씨	1/49					1/49
3	건축공간연구원	1/36					1/36
4	국민대산학협력단	1/50				1/50	
5	군산대산학협력단	1/67		1/67			
6	남서울대산학협력단	8/450	1/85	1/78		3/121	3/166
7	담비	1/46				1/46	
8	대한의료감정학회	1/194			1/194		
9	리서치앤리서치	1/5				1/5	
10	법무법인세종	1/147		1/147			
11	보훈교육연구원	3/92		1/50			2/42
12	블루위즈컨설팅	2/69					2/69
13	사회문화정책연구원	1/55					1/55
14	서울대산학협력단	1/76		1/76			
15	아주대산학협력단	2/86	1/46				1/40
16	안스디자인	1/38			1/38		
17	에이아이컴스	1/30					1/30
18	에이치앤피파트너스	1/20				1/20	
19	연세대산학협력단	1/49		1/49			
20	와이즈포스트	1/46			1/46		
21	우리환경연구소	1/27					1/27
22	유알도시공간연구소	1/30				1/30	
23	을지대산학협력단	2/122		1/72			1/50
24	이화여대산학협력단	1/50			1/50		
25	제이에스브이	1/50				1/50	

연번	연도 수행기관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6	조선대산학협력단	1/79			1/79		
27	중부대산학협력단	1/39				1/39	
28	중앙경영연구원	2/93	1/43				1/50
29	청주대산학협력단	1/63					1/63
30	충남대산학협력단	1/59			1/59		
31	코리아리서치센터	1/20				1/20	
32	통일안보전략연구소	1/40	1/40				
33	티지	1/47	1/47				
34	플레이스랩	1/58				1/58	
35	핀노드	1/147		1/147			
36	한국갤럽	1/11				1/11	
37	한국공공외교학회	1/20			1/20		
38	한국관광개발연구원	1/20				1/20	
39	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	1/50	1/50				
40	한국도시연구소	1/18			1/18		
41	한국문화기획학교	1/70					1/70
42	한국법제연구원	1/45			1/45		
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350	1/90		2/107	3/153	
4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5			1/45		
4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99				1/49	1/50
4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65				2/65	
4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59				1/20	1/39
48	한국정책학회	3/110	1/20			1/45	1/45
49	한국조직학회	1/9				1/9	
50	한국지식오름연구원	1/39			1/39		
51	한국행정연구원	7/368			1/53	3/144	3/171
52	한국행정학회	2/65		1/45			1/20
5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0			1/20		
54	한성대산학협력단	2/99			1/49	1/50	

참고3

정부출연기관법 시행99년 후 개별법상 신규 설립된 연구기관

기관	소관부처	설립연도	근거법률	정부지원('24)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2021	중소기업 기본법	보조금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조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기본법	출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2014	국민건강증진법	보조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2013	발명진흥법	보조금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연금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복지법	보조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출연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2005	노인복지법	보조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출연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2002	청소년복지지원법	출연금·보조금

참고4

보훈교육연구원 현황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 연혁

- ('63.1.) 종합원호원으로 개원(직업보도, 양로·양육보호 수행)
- ('93.2.) 보훈연수원으로 개칭
- ('99.1.) 보훈연수원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위탁
- ('01.2.) 보훈교육연구원으로 개칭
- ('05.2.)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 개소
- ('06.2.) 현 보훈교육연구원으로 신축 이전

□ 조직 및 인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보훈교육연구원장						
운영부		연수부		연구부		
구분	계	연구직	사무직	기능직	별정직	업무지원직
정원(A)	37	5	9	14	1	8
현원(B)	31	4	8	11	1	7
결원(A-B)	6	1	1	3	-	1

□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예산)
수입	세출예산	715	3,721 ¹⁾	5,096	5,096
	연구용역	141	18 ²⁾	43	350
	기타(공무원교육 등)	209	661	752	444
	소계(A)	1,065	4,400	5,891	5,890
지출	인건비	1,868	2,018	2,045	2,285
	경비 등	1,536	2,966	4,260	4,111
	소계(B)	3,404	4,984	6,305	6,396
보훈공단 부담금(B-A)		2,339	584	414	506

1) '23년 보훈정신계승발전 위탁사업 예산 대폭 확대 반영

2) 연구용역은 대부분 보훈공단 내부적인 위탁 과제